

#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2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1990.03.01.제정 2004.12.01.개정 2012.02.01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10.21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교육과 정심의 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.)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영역별 책임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- 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  - 1.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
  - 2.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
  - 3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4. 삭제 <2004.12.01.>
  - 5. 교육과정심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<신설 2020.06.19.>
  - 6.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
- **제4조(임무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20.09.25., 개정 2021.10.21.>
  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괄한다.
  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-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삭제 <2012.02.01.>

제7조(업무관장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0.09.25.>



###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2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제8조(수당) 본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9조(환류)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심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환류를 실행한다.
  - ① 교무처는 처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심의 프로그램 수요도·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25.>
  - ② 교무처 주관 사업 실행 성과와 부서 및 대학 자체 수요도·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,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.<개 정 2020 09 25 >
  - ③ 교무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<성과 분석 및 환류 계획 보고서>를 작성하여 교육품질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.<개정 2020.09.25.>
  - ④ 교육품질개선위원회, 기획위원회의 심의에 기반하여 권고된 추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
  - ⑤ 환류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환류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한다. 필요시 교육과정심의위 원회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환류보고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안, 개 선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다.
  - ⑥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심의 개선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, 추가 개선안을 제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02
제정일자	1990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・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